
I

한국은행 개요

| | |
|--------------|---|
| 1. 연혁 및 설립목적 | 3 |
| 2. 조직 | 5 |

1. 연혁 및 설립목적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 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

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담당했던 은행 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그림 1 - 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1950년 6월 5일)



자료: 한국은행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위원의 임기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는 교차임기제¹⁾가 도입되고 한국은행의 통계·경제조사 관련 자료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그림 1 -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2020년 8월 27일)



자료: 한국은행

1) 법 개정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이 최초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부칙에 명시)하고,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임(前任) 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만료 직후 개시되도록 하였다.

2. 조직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임명직 위원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의 임명직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추천기관²⁾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원 상근³⁾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한국은행 부총재(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이며⁴⁾ 연임할 수 있다.⁵⁾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림 1 -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2020년 12월 31일 현재)

| | |
|---|--|
|  | 이 주 열 (한국은행 총재, 2014년 4월 1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 |
|  | 고 승 범 (한국은행 총재 추천, 2016년 4월 21일 ¹⁾ ~)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  | 임 지 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2018년 5월 17일~) <주요경력> 제이피모건 수석부장 /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  | 조 윤 제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대통령 경제보좌관 IMF·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  | 서 영 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금융시장부장 |
|  | 주 상 영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건국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이 승 헌 (한국은행 부총재, 2020년 8월 21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국은행 공보관 |

주: 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되어 4년 임기(2016년 4월 21일~2020년 4월 20일)를 마친 후, 2020년 4월 21일 한국은행 총재 추천으로 연임됨(임기 3년)

자료: 한국은행

- 2)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다.
- 3)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 시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래 비상근이던 임명직 위원의 근무형태를 전원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 4) 2020년 4월 임명직 위원 4인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된 2인의 위원에는 일회성으로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이는 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5) 총재와 부총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권 발행, 여수신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금융기관 검사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은 물론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보수기준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중 정기회의 24회, 임시회의 4회 등 총 28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 주요 현안 토의 및 본회의 상정안건 사전심의 등을 위해 위원협의회를 87회 열었으며,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를 16회 개최하였다. 2020년 중 회의 개최 횟수는 총 131회로 예년보다 많았는데, 이는 기준금리 조정, 새로운 금융지원책 마련 등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와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표 1-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회)

| 연도 | 본회의 | 정기 | | 위원 협의회 | 심의 위원회 | 계 |
|------|-----|----|----|-----------|-----------|-----|
| | | 정기 | 임시 | | | |
| 2018 | 26 | 24 | 2 | 81 | 14 | 121 |
| 2019 | 25 | 24 | 1 | 78 | 16 | 119 |
| 2020 | 28 | 24 | 4 | 87 | 16 | 131 |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해 정기회의의 개최일자를 사전에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있다. 연간 총 2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가운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8회,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4회 개최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이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은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나. 집행간부 및 감사

한국은행은 집행간부로서 총재, 부총재 및 부총재보 5인을 두고 있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절차⁶⁾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며,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한국은행법」 등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도 지닌다. 현 이주열 총재는 2014년 4월 1일 임명되었고 2018년 4월 1일 연임하게 되었다.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으로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총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재가 직무를 수행

6) 국회 인사청문절차는 제9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동 법 시행(2012년 4월 22일) 후 최초로 임명된 이주열 총재부터 적용되었다.

할 수 없을 경우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2020년 말 현재 한국은행은 본부에 17개 부서(13국 1실 3원)와 10개 국소속실, 1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20개 부와 146개 팀(6개 연구실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과 지방에 16개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7개 기획조사부와 54개 팀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직원수는 2,445명⁷⁾이다.

각 부서의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은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부서 간 업무 조정,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업무활동 조정 및 종합,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관리, 법규 검토, 디지털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2020년 12월 31일 현재)



총재
이주열
(2014년
4월 1일~)



부총재
이승헌
(2020년
8월 21일~)



부총재보
유상대
(2018년
5월 15일~)



부총재보
정규일
(2018년
5월 15일~)



부총재보
박종석
(2019년
7월 25일~)



부총재보
이환석
(2020년
3월 9일~)



부총재보
배준석
(2020년
11월 24일~)



감사
장호현
(2018년
9월 10일~)

자료: 한국은행

7)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부총재 포함), 집행간부 및 감사 등 1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국은 대내외 의견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통합, 화폐박물관 운영 등 홍보활동, 정보자료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 대국민 경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산정보국

전산정보국은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등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은 인적자원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와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국

조사국은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산업동향 분석 및 산업정책 관련 조사연구, 고용관련 분석 및 전망,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조사연구, 계량모형 개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국은 국민소득, 통화금융, 국제수지, 물가,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등 경제통계의 편제, 분석 및 개발과 함께 통계품질평가, ECOS(경제통계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상황 분석·종합평가, 시스템리스크 측정·분석 및 모형 개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및 파급경로 분석, 은행 및 비은행 관련 조사연구, 금융제도 관련 조사연구,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분석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입안, 정책수단 기획 및 운용, 통화신용정책 여건 및 효과 분석, 통화신용정책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시장국

금융시장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통화·금리 분석 및 전망, 금융시장 및 기업금융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및

감시,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사연구, 전자금융관련 기획 및 조사, 금융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여수신 및 국고, 증권, 기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발권국

발권국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관리, 화폐 및 발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발권업무 기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국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기획·조사·분석, 외환시장 및 환율 관련 업무, 보유외환 및 외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외환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외환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국제금융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 및 금융·지식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외자운용원

외자운용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 기획, 국외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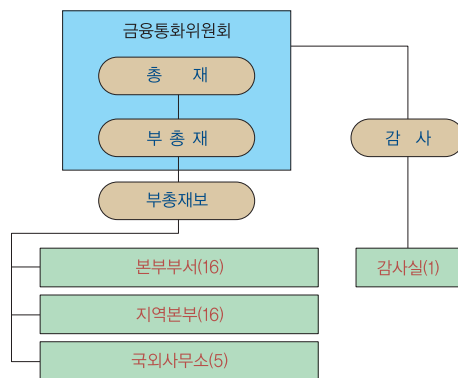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5. 조직 구성



자료: 한국은행